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(안 제27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90조제1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